

인천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나6357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백

담당변호사 이종원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조영준

변 론 종 결 2022. 8. 26.

판 결 선 고 2022. 10. 21.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5. 31. 선고 2020가소6122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4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원고는 인천 강화군 C에서 토목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부풀리거나,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하였고, 현장작업자 D의 개인적인 물품대금까지도 원고에게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42,960,600원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1. 14.까지 그중 23,800,000원을 선지급하고, 이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천지방법원 2018가소475339, 2019나66715, 2020다244870 사건,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통하여 19,160,6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21,044,900원(= 선지급한 23,800,000원 중 원인 없는 1,884,300원 +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19,160,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금액 중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19,160,600원에 관하여는 보건대,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청구는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미수금 채권 19,160,600원의 존재와 모순관계에 있는 것을 소송물로 하는 것으로,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아울러, 원고가 피고에게 선지급한 23,800,000원 중 1,884,300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금액을 부풀리거나,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거나, 현장작업자 D의 개인적인 물품대금까지도 원고에게 청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인식, 판사 박미영, 판사 최민혜